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임실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임실군의회는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임실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관련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청렴도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임실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라. 「임실군 공무원 복무 등 운영 조례」에 따른 공무원근로자

마. 「임실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임실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
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청렴 활동 평가 및 조사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청렴도 진단·평가) ① 의장은 군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와 군민에게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